

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수탁기관 공개모집

「건강가정지원법」 및 「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조례」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수탁기관 공개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18년 10월 12일

서울특별시장

I. 위탁대상 사무(시설)현황

가. 센터명 : 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센터(개 소 일 : 2007. 10. 01)

나. 소재지 : 서울특별시 중구 예장동 소파로 4-6

- 규 모 : 대지 537.2㎡, 건물 353.43㎡(지상2층)

- 주요시설 : 교육실(1실), 회의실(1실), 사무실(2실)

다. 조직/인력 : 4팀 12명(센터장, 팀장 4명, 팀원 7명)

라. 주요 사업내용

- 시민을 대상으로 한 건강가정교육·가정문제상담 및 가족생활문화운동 전개
- 시 단위의 가족지원서비스를 위한 욕구 조사 및 프로그램 개발
-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한 사업지원·평가 및 가정관련 정보 제공
- 그 밖에 가족지원서비스 제공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정하는 사업

II. 공통사항

가. 위탁기간 : 3년 (2019. 1. 1 ~ 2021. 12. 31)

나. 신청자격 (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)

-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법인
-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
-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
- 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
-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단체
-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
-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

다. 제출 서류

- 운영신청서 : 서울시 홈페이지(www.seoul.go.kr) 게시
- 위탁신청법인(단체 등) 제출자료 각 10부
- 법인(단체 등) 등기부등본, 임원 및 자산현황(증빙서류 첨부), 정관 및 허가증 사본 각10부

라. 제출방법 및 수량

- 1권의 책으로 편철하여 10권 제출
- ※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1권으로 책으로 편철하여 신청기관 직인 날인된 원본 1부 및 사본 9부

마. 신청서 접수

- 접수기간 : 2018. 10. 29(월) ~ 2018.10.30(화) 10:00~17:00
- 접수 방법 : 직접 방문접수(※ 우편접수는 하지 않으며 제출 후 변경 불가)
- 접수장소 :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(서울시청 신청사 9층)

바. 선정심사위원회 개최

- 일 시 : 2018. 11.15(목) 14:00(예정)
 - 장 소 : 서울시청 신청사 9층 공용회의실
 - 발표순서 : 접수순으로 하며, 발표 15분 /질의응답 10분으로 진행
- ※ 선정 심사일정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사. 선정기준

- 신청 법인의 공신력(15점), 재정능력(15점), 사업수행 능력(70점)
 - 운영의지, 전문성, 역량수준, 재원안정성, 센터 운영 능력
 - 가족프로그램 추진실적, 운영계획의 적정성, 실행가능성, 지역사회의 기여도 및 연계성 등

아. 선정방법 :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제출된 서류 및 현장실사, 제안 설명 및 질의응답 결과를 검토·심의하여 최고득점 법인을 우선협약대상단체 선정

자. 선정자발표 : 2018. 11. 16(금) 18:00(예정), 시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통보

차. 협약체결

- 우선협약대상 법인(단체 등)과 협약체결(단, 우선협약대상단체가 결격사유 등의 하자가 있거나 기한 내에 협약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다음순위 득점법인(단체 등)과 협약체결)

카. 운영지원 : 서울시 예산지원 범위내(' 18년 1,323,591천원)

파. 기타 유의사항

-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.
- 소정양식은 서울시 홈페이지(www.seoul.go.kr)에서 내려 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

- 제출된 신청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.
- 선정된 법인(단체)는 협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협약이행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선정된 법인(단체)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고용된 근로자를 우선 고용함으로써 고용승계 비율이 80%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.
-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가족담당관(☎2133-5169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